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319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. 8. 1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,
 - 가. 별지목록 제1, 3, 4, 5, 6, 7,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 및
 - 나.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58분의 35 지분(공유자 지분 43분의 35 중 6분의 1)에 관하여 각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2023. 8. 23. 접수 제116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박세영

별지